



2006년도

# 농림사업시행지침서(육계관련)

농림부

##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(공공)

### ① 축산물 자조금 조성

#### 1. 목적

-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, 소비촉진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
-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경쟁력 제고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
-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%범위 이내에서 지원
-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
-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므로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, 특히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

#### 3. 근거법령

-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 5. 13 제정·공포)
- 축산법 제26의 3(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)

##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〉

〈표 1〉 연도별 지원계획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'92~'02	2003	2004	2005	2006	2007 이후
사업량	3개축종	3	5	5	6	8
사 계	15,016	2,658	18,900	20,500	27,200	323,400
업 보 조	6,167	1,329	9,450	10,250	13,600	161,700
비 부담	8,849	1,329	9,450	10,250	13,600	161,700

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### 가. 사업내용

#### 1) 배경

-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(젓소, 돼지, 닭)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
-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(2000.6.1)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
-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(2002.5.13)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(2002.11.14)

#### 2) 지원대상

-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,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

#### 3)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

-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,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.
- 축산물(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쇠고기, 오리고기, 녹용 등)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

#### 4) 자조활동자금의 재원

-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
-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
-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
-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밖의 수입

#### 5)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홍보
-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
-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6) 자조활동자금의 운용

-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
-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착수 및 추진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, 사업추진 기관 및 업체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하여 축산단체가 사전 협의하도록 함.
- 자조활동자금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용함
  -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·계리
  -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,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촉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.
  - 축산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(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의회의 보고·승인)을 얻어 공시
  - 축산단체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(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의회의 보고·승인)을 얻어 공시

## 7) 세부시행계획 내용(예시)

### ① 소비촉진 홍보사업

- 소비홍보에는 특히, 비선호 부위(수출부위) 소비 활성화 및 축산업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, 라디오, 신문, 잡지 등 광고와 홍보 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.
- 요리개발 및 홍보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개발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 개발 등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홍보 이벤트 행사와 병행한 비선호 부위 요리경연대회 개최, 여성 단체·음식협회·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한 요리 시식회 및 요리 강습회 개최,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 시식사업 실시와 TV 광고 및 방송사 취재유도, 음식점과 주부들에게 요리책자·팸플릿 제작 배부 등 내용 포함.

### ② 축산업자·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
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및 위생 개선, 축산관련 전문 신문, 잡지 등에 계도 광고, 홍보물 제작 배부, 시·도별 축산농가 교육, 단체별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, 항생제 잔류의 문제점 등 농가 교육 내용 포함.
- 생산자 교육에는 자조활동자금의 조기정착 및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별 자조금 설명회,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대상 사업 설명회, 자조금 거출 홍보물 제작·배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자조활동 사업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 포함.
- 정보 제공에는 선진 사양관리 기술 보급 및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월간지 발행, 양축농가 계도 홍보물 제작·배부, 질병, 사양기술, 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등 내용 포함.

### ③ 조사·연구사업

-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내 소비현황 및 시장분석 등 소비 실태 조사, 축산물의 식품영양학적·의학적·한의학적 효능 연구 포함.
- 선진국의 축산업 실태와 경쟁력 비교 조사
- 선진국의 축산물 생산정보, 기술수준, 수출진흥 전략,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사·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여건에 관한 정보 제공
- 수출전략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연구
  - 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, 비선호 부위 소비 및 수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
  -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축산 선진국의 자조금사업 운영, 축산 실태 조사

## 나. 2006년도 지원계획-(표 2)

〈표 2〉 2006년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2005 촉발기금	2006 사업비			
		합계	촉발기금		자부담
			소계	보조	
축산자조활동자금	10,250	27,200	13,600	13,600 (50%)	13,600 (50%)
- 한 우	800	8,000	4,000	4,000	4,000
- 젓 소	2,100	4,200	2,100	2,100	2,100
- 양 돈	4,500	9,600	4,800	4,800	4,800
- 산란계	1,500	2,700	1,350	1,350	1,350
- 육 계	1,000	2,000	1,000	1,000	1,000
- 오 리	250	500	250	250	250
- 사 슝	100	200	100	100	100

■ 문의 : (031)707-5722 (사)한국계육협회  
(02)500-1907 농림부 축산경영과

**축산물 유통개선사업(공공)**

① 축산물 도축·가공업체 지원사업

1. 목적

- 위생적인 도축·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
- 부분육·냉장육·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
-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
-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·폐합 추진 및 기타가축 도축기반 마련
- 고품질 및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
-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 및 경영평가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

(표 3) 연도별 지원계획 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	2004	2005	2006(예산안)
계	○ 사업량	85	168	183
	○ 사업비	144,444	182,361	188,717
	- 축발기금 용자	129,112	170,666	178,238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15,332	11,695	10,479
시설 자금	○ 사업량	25	19	22
	○ 사업비	51,106	38,983	34,929
	- 축발기금 용자	35,774	27,288	24,450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15,332	11,695	10,479
운영 자금	○ 사업량	60	149	161
	○ 사업비	93,338	143,378	153,788
	- 축발기금 용자	93,338	143,378	153,788
	- 지방비	-	-	-
	- 자부담	-	-	-

-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
-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등급란 수집 및 판매자금 지원
-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유업체에 이관시 잉여물량에 비례하여 운영자금 지원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,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

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3〉 참조

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- ①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
- ② 도축장 시설보완
- 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
  - 1)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·저장시설, 운송·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 (우선지원 요건)
  - 도축장내에 육가공장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고자 하는 업체
  - 2차 육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
  - HACCP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하기 위해 개보수하고자 하는 업체
  - 2) 지원조건 : 연리 4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(용자 70%, 자담 30%)
  - 사업기간 : 1~3년(사업계획에 의함)
  - 지원액 :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·반영
  - 3) 지원내용
    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, 가공·저장시설, 운송·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
  - 4)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: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③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인원 ④신용조사서(별첨2) ⑤기타 관련자료 등
    - ※ (별첨2)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

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

- 사업계획서내에는 사업개요, 가공장 시설계획,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, 원료육확보 및 판매계획(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), 사업시행일정,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(5개년) 등이 포함되어야 함.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농림부에 보고

#### ④ 도축장 운영자금

- 1) 사업대상자
  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등급(33%) 및 중위등급(33%)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로서 소·돼지 도축장의 경우 업체당 2005년도 도축실적이 일정수준 이상(소 6,000두/년이상 또는 돼지 180천두/년이상)인 경우에만 지원
  - 단, 2005년도에 도축장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도축실적이 상기 기준 미만시 2005년도 지원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  - ※ 소·돼지 도축장은 총 지원받는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(소 또는 돼지 기준)이 2005년도 전국 도축물량(소 또는 돼지기준) 범위내에서 제한하여 지원함
- 2) 지원조건 :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에는 0% 금리, 중위등급에는 3% 금리 지원, 1년거치 일시상환(공통)
  - ※ 당해연도, 동일업체에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(원료구매자금) 이중 지원신청 불가

#### 3) 지원단가

가) 정부지원 7개 LPC(안성, 청원, 홍성, 김제, 군위, 원주, 제천) : 50억원이내

-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(임차)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·구매·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무관하게 LPC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3% 금리로 지원

나) LPC를 제외한 일반 도축장 : 20억원 이내에서 지원

#### 4)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

- 시·도지사는 도축업체의 사업신청서상에 실적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정확히 심사한 후 동 신청서(별첨4)와 선정기준표(별첨5)를 농림부에 제출(실적 등 증빙자료는 시·

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)

- 농림부장관은 업체별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·통지

#### 5) 지원용도

- LPC의 경우 LPC 건설부채상환, 원료구매자금,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등으로 사용
  - 일반도축장은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 제반 운영자금
- 6) 사업신청서 제출서류
    - 업체 : 사업신청서(별첨4) 및 증빙서류를 시·군·구(시·도지사)에 제출
    - 시·도지사 : 사업신청서(별첨4) 및 선정기준표(별첨5)를 농림부에 제출
    - 선정기준표는 시·도지사가 작성하고 업체의 증빙서류는 시·도에서 보관하고 농림부에는 미제출

#### ⑤ 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자금

#### ⑥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

- 1) 사업대상자 : 고품질·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
- 2) 지원액 : 월 원료구매 소요액
- 3) 지원조건 : 연리 4%, 1년거치 일시상환
  - ※ 당해연도, 동일업체에 도축장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과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(원료구매자금) 이

〈표 4〉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(개소)	사업비						
		사업비합계	예산액(축발기금)			지방비	자부담	
			계	보조	융자			
계	183	188,717	178,238	-	178,238	-	10,479	
소계	22	34,929	24,450	-	24,450	-	10,479	
시설	○도축장시설현대화	2	10,000	7,000	-	7,000	-	3,000
	○도축장시설보완	6	3,500	2,450	-	2,450	-	1,050
	○축산물가공시설	14	21,429	15,000	-	15,000	-	6,429
자금	-축산물가공업체	14	21,429	15,000	-	15,000	-	6,429
	-계란집하장자금							
	소계	161	153,788	153,788	-	153,788	-	-
	○도축장	85	63,707	63,707	-	63,707	-	-
	○오리도축·가공장	4	1,891	1,891	-	1,891	-	-
운영	○축산물가공업체	67	50,000	50,000	-	50,000	-	-
	○계란등급시설	5	3,150	3,150	-	3,150	-	-
	○유가공업체	109,500톤	35,040	35,040	-	35,040	-	-

중 지원신청 불가

- 4) 사업주관기관 :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, 한국육가공협회(2차 육가공업체 중 희망업체가 있는 경우)
- 5) 사업 시행절차
  -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결과를 농림부에 보고
  - 농림부는 사업비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희망업체 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
  - 단,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직접 사업대상자이거나 비농협조합이라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가능(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에 대출취급 희망기관 명기)
  - 사업대상업체는 지원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

나.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-〈표 4〉 참조

② 축산물 등급판정

1. 목적

〈축산물등급판정〉

-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
-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확보

〈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〉

-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반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
-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및 육성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〈축산물등급판정〉

- 축산물등급제의 조기 정착으로 품질고급화 실현
-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
- 계란 및 닭고기 등급제 추진
- 등급제 교육 및 홍보 실시

〈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〉
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
- 인증 현지실사 대상경영체 선정 및 현지실사
-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선정
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

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시책의 강구), 제28조 및 제29조(축산물등급판정)

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5〉

〈표 5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92~'02	2003	2004	2005	2006(예산안)	
사 업 량	1	1	2	3	2	
합 계	76,211	13,492	13,618	14,147	14,385	
축산물 등급 판정	계	76,211	13,492	13,520	13,887	14,203
	보조	76,211	7,292	7,824	8,515	7,194
	융자	-	-	-	-	-
	지방비 자부담	-	-	-	-	-
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	계		98	200	182	
	보조		98	200	182	
	융자		-	-	-	
	지방비 자부담		-	-	-	
브랜드 육포 장제 지원	계			200		
	보조			60		
	융자			-		
	지방비 자부담			140		

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축산물등급판정〉

- 사업개요
- 가. 사업내용
  -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·돼지 등급판정
  -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 추진
  -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홍보
  -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
  - 등급판정 기술 개선
  - 생산농가, 유통업자,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나.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-〈표 6〉 참조

〈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〉

〈표 6〉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 용 별	사업량	사 업 비			자부담
		사업비 합계	예산액(축산발전기금)		
			계	보조	
계		14,203	7,194	7,194	7,009
등급판정소운영	1개소	14,203	7,194	7,194	7,009

□ 사업개요

가. 주요사업
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·운영
-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
-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

나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06. 2월 ~ 2007. 1월
- 총사업비 : 182,000천원
- 지원형태 : 보조 100%
- 지원조건 : 정액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물브랜드 경영체
- 문의 : (02)500-1921~22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
(031)390-5500 축산물등급판정소

##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(공공)

### ① 가축계열화사업

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
-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

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7〉

〈표 7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'91~'03	2004	2005	2006(예산안)	2007 계획
닭·오리	사업량	16	2(2)	1(1)	3	3
	금 액	87,050	15,500	3,791	13,300	13,300

※ ( )내는 지원업체 중 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·지원된 업체수

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개요

1) 사업내용

- 자금지원대상자 : 가축계열화 사업자
- 지원내용 및 조건 : [별표 1] 참조
- 대상축종 : 돼지, 닭, 오리

2) 대상자선정

(가) 신청자격

-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부고시 제 2003-10)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

〈제한사항〉

- 닭·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닭은 500천수, 오리는 200천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- 계열참여 농가의 70%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.
-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 등)은 농림사업실시규정 [별표3]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
-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 불가(단, 시설비는 지원가능)

〈우선지원 요건〉

-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

(나) 신청절차
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격요건,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신청
- 시·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
- (다) 사업타당성 검토
  - 농림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·업계·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(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)
  -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
    - 주요심사내용 : 계열주체 자격요건, 부지확보여부,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, 계열요소구비사항, 사업계획서 타당성, 계열농가와와의 계약여부, 경영기록사항, 자금상환능력 등

3) 자금지원방법

- ① 계열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
  -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.
  -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한.
  -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-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의 사육·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가능
- ② 계열주체를 통해 계열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
  -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해야 함.
  -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해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

4)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-〈표 8〉

〈표 8〉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내용 (단위 : 백만원)

축종	사업비	축산발전기금		지방비	자담
		보조	융자		
닭·오리	19,000	-	13,300	-	5,700

5) 기타사항

-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 것,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(신규 및 보완사업)
  - 정부시책 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
  - 계열사업 완성년도,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,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,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(축발기금, 자부담구분)을 명시
- 사업추진규모
  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(농가는 25호) 이상
  - 닭(산란계) : 연간 계란 생산·처리능력 150백만개(농가는 25호) 이상
  - 오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,000천수(농가는 15호) 이상
  -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
    - 닭·오리 :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해야 함)

나. 추진체계

1) 사업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
2) 사업 담당부서

- 농림부 : 축산경영과(02-500-1907~8 : 닭·오리)
- 시·도 : 도 축산과, 광역시 농정과(축산계)
- 시·군·자치구 :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(축산계)

3) 사업시행

(가) 사업계획의 수립

-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
-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
-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(고유 브랜드)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.
-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 확보
  -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해야 함.
- 사업계획의 조정 :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

(나)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

- 협의체 구성
  -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

[별표 1]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범위	지원조건	비 고
1. 계열주체사육시설	○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상환	
2. 계열농가생산시설	○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	- 사업비의 70%이내 - 연 3%(변동이 있을 수 있음)	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
3. 가공시설(육가공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장 등)	○ '축산물 도축·가공시설설치지원' 사업과 동일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상환	
4. 유통·판매시설	○ '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' 사업 내용과 동일		
5. 계열화사육비	○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○ 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	

※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외의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함.

-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, 자재공급, 농가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
-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, 계약체결,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
-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
-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
-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,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,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해야 함.
-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해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·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.
-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,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.
-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해 판매대책(자체구매, 판매알선)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함.
-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·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

형태로 전환 추진

## ②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지원

### 1. 목적

-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확대 및 판로 확보

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축산물 브랜드화 촉진
- 브랜드가맹점, 닭고기체인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 제 형식으로 지원

### 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#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9〉 참조

#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- 브랜드 가맹점 설치
- 닭고기체인점 설치
- 사업대상자 :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
〈표 9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	1993~2003	2004	2005	2006(예산안)
소매유통 시설	사업량	2,052	사업량 : 50개소 사업비 : 25,000 (용자 : 17,500, 자담 : 7,500)	사업량 : 22개소 사업비 : 10,700 (용자 : 7,500, 자담 : 3,200)	사업량 : 17개소 사업비 : 8,571 (용자 : 6,000, 자담 : 2,571)
	계	255,755			
	사업비	219,813			
	용자 자부담	35,942			
브랜드 가맹점	사업량	679	사업량 : 25,000 (용자 : 17,500, 자담 : 7,500)	사업량 : 22개소 사업비 : 10,700 (용자 : 7,500, 자담 : 3,200)	사업량 : 17개소 사업비 : 8,571 (용자 : 6,000, 자담 : 2,571)
	계	156,000			
	사업비	109,180			
	용자 자부담	46,820			
닭고기 체인점	사업량	30	사업량 : 25,000 (용자 : 17,500, 자담 : 7,500)	사업량 : 22개소 사업비 : 10,700 (용자 : 7,500, 자담 : 3,200)	사업량 : 17개소 사업비 : 8,571 (용자 : 6,000, 자담 : 2,571)
	계	29250			
	사업비	20475			
	용자 자부담	8775			
합계(축발기금 용자)		349,468	17,500	7,500	6,000

- 개소당 사업비 : 기금 용자금 기준 개소당 30백만원 이 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
- 지원내용 : 판매장 시설비,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, 점포구입비(임차료 포함)

나. 지원조건

- 연리 4%, 3년거치 5년상환

다. 사업자 준수사항(브랜드가맹점시설)

- 축산물가공처리법, 축산법,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 함.
-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 육만을 판매
- 브랜드 주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(인테리어, 간판 등)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
- 브랜드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와의 거래증명내역을 1년간 보관

라. 추진체제

- 사업주관기관 : 농협중앙회
- 사업대상자 추천기관 : 시·군·구, 단, (사)한국계육협회 및 (사)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원은 소속협회 추천으로 가능
- 사업담당부서
  - 농림부 축산물위생과(02-500-1925~6)
  - 시·도(시·군·구) : 담당과(축산과, 농정과 등)
  - 닭고기 관련협회 : 한국계육협회(031-707-5722),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(02-3401-0144)

○ 사업시행절차

- 사업희망자는 시·군·구, 닭고기 관련협회(이하 '추천기관')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, 대출추천서(붙임1)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(축)협 창구에 자금대출 신청
- 추천기관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사(지역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성, 인허가 및 부지확보 가능성, 사업희망자의 사업추진 의지 등)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, 사업대상자 대출추천현황(붙임2)을 지체 없이 농림부에 보고(시·군·구는 시도 경유)
- 사업희망자(닭고기 체인점 제외)는 시설이 설치되는 시·군·구의 대출추천서(붙임1)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고자하는 농(축)협 창구에 대출 신청
- 추천기관에서는 수시로 사업신청을 받아 농협에 용자금 대출을 추천하되,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착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추천하고, 사업비도 당해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배정(연도별 소요액 배정)하여 이월을 최소화
- 농협에서는 추천기관이 발급한 대출추천서를 확인한 후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기성금액을 대출
- 대출상당 및 대출심사 후 총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당해 대출 소요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에 자금배정을 요구(붙임3)하고(농업금융부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에 수시로 용자한도 배정요청), 자금배정을 받아 대출실행
-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결과(붙임4)를 해당 추천기관 및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에 제출
-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취소됨을 고지하고, 수시로 계통조직을 통해 사업비 반납자 현황(붙임2)을 제출
- 기성고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(증빙서류 첨부)
- 농림부는 동 사업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자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
- 추천기관에서는 사업완료상황을 파악하여 업소명, 주소, 사업비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(음식점점업 별도 표시)
- 사업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, 계약 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(자가 시공은

인정하지 않음)

### ③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

#### 1. 목적

-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, 재무,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·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도모
- 규모화·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·지원하여 우수 축산물브랜드 벤치마킹 유도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산지축산물생산유통·지원사업(브랜드사업) 지원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
- 대부분 브랜드 경영체에서 취약한 경영, 마케팅 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

#### 3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##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0〉

〈표 10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3년	2004	2005	2006	2007 계획
사업량	-	-	10개소	10개소	10개소
사업비	계	-	1,000	1,000	1,000
	보조	-	500	500	500
	지방비	-	200	200	200
	자부담	-	300	300	300

##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(1) 배경

- 소비자의 기호가 위생·안전·품질로, 유통형태는 지육에서 부분육·소포장으로, 유통경로는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축산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
- 농장에서 식탁까지 브랜드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중

점 육성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화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

(2) 지원대상

- 브랜드사업(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) 선정 경영체 -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

(3)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

- 사업량 : 10개소
- 사업단가 : 1억원 이내(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)
- 지원비율 : 기금보조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

나. 2006년도 사업비(예산) 내용-〈표 11〉

〈표 11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			
		합계	보조	지방비	자부담
축산물브랜드컨설팅 지원	10개소	1,000	500	200	300

### 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(공공)

#### ① 가축질병근절대책

#### 1. 목적

-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·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,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제로 전환
- 구제역·돼지콜레라·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
- 도축장에서 생체·해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위한 전문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선진국형 도축검사체제로 전환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
- 가축방역대책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·포상 실시

#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민·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

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· 인건비 · 자산취득비 등 지원
- '전국일제소독의 날' 의 정례적 운영 지원
-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(3,880개단) 운영비 지원
-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
- 신고 사안별로 20~100만원 포상금 지급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 · 장비 지원(도축장 1개소 선정)
- 가축방역 및 소부루세라 근절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 · 포상 실시

**3. 근거법령**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(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) 및 축산법 제39조(기금의 용도)

**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2〉**

〈표 12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1	2002	2003	2004	2005	2006(예산안)	2007 이후	
사업량								
사업비	계	28,011	20,075	26,052	27,077	34,678	35,222	36,000
	보조	24,755	12,071	18,845	19,437	25,948	25,576	26,000
	융자	-	-	-	-	-	-	-
	지방비	-	6,300	6,300	7,390	8,530	9,546	10,000
	자부담	3,256	1,704	907	250	200	100	-

**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**

〈사업개요〉

- 가. 사업내용
  -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
  - 사업내용 : 방역본부 운영비 · 인건비 · 자산취득비 등 지원
  - 지원대상 : 본부(19명), 8도본부(32명), 40출장소(방역요원 205명, 도축검사보조원 130명) 운영비 · 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
  - 지원조건 : 운영비 · 인건비 및 기자재 100% 보조(단, 출장소 방역요원 ·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30% 부담)
  - ※ 방역요원 및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(별표)
  -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
  - 사업내용 : 매주 수요일을 '전국일제소독의 날' 로 지

- 정,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
-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(30회) 및 공동방제단(3,880개단) 운영(운영비 지원 연 18회)으로 소독 지원
- 지원대상 : 농협(소독약품)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(운영비)
- 지원조건 : 소독약품(국비 100%), 공동방제단 운영비(국비 50, 지방비 50)
- 전염병 발생신고 · 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
- 구제역 · 조류인플루엔자 · 광우병 등 발생신고자, 예방접종 · 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(건당 20~100만원, 국비 100%)
-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 · 장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도축장 1개소 선정 지원
- 지원조건 : 기금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- 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(국비 100%)
- 가축방역사업 : 총 39개소(도 3, 시협소 6, 시 · 군 30) 평가 및 포상
- 소부루세라 근절사업 : 총 30개소(시 · 군 27, 한우협회지부 3) 평가 및 포상

나. 2006년도 사업비 내용〈표 13〉  
참조

② 축산물검사

**1. 목적**

- 축산물(식육 · 우유 등)의 위생 ·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

**2. 시책 및 추진방향**

- WTO/SPS 협정에 따라 국내 · 외 축산물의 차별 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· 공급을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

**3. 근거법령**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(축산물의 검사) 및 제40조

〈표 13〉 2006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 용 별	사업량	사 업 비					
		사업비 합 계	예산액(축발기금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 조	용 자		
계		35,222	25,576	25,576	-	9,546	100
방역본부운영지원		12,887	10,291	10,291	-	2,596	-
○인건비		10,682	8,086	8,086	-	2,596	-
-정규직(본부·도본부)	51명	1,986	1,986	1,986	-	-	-
-비정규직(방역요원)	205명	5,563	3,894	3,894	-	1,669	-
-비정규직(도축검사보조원)	130명	3,133	2,206	2,206	-	927	-
○운영비·자산비		2,205	2,205	2,205	-	-	-
-운영비		1,887	1,887	1,887	-	-	-
-자산취득비	차량등 274점	318	318	318	-	-	-
채혈기자재	주사기 800천개 등	1,023	1,023	1,023	-	-	-
신고포상금	50건	10	10	10	-	-	-
공동방제단지원	18회	13,500	6,750	6,750	-	6,750	-
전국일제소독약품	30회	6,231	6,231	6,231	-	-	-
가축방역특별포상	39개소	281	281	281	-	-	-
소부루세라방역특별포상	30개소	290	290	290	-	-	-
SRM제거시설·장비	1개소	1,000	700	700	-	200	100

(보조금)

〈표 14〉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3	2004	2005	2006(예산안)	2007 이후	
사업량	-	93점	73점	101점	400점	
사 업 비	계	64,900	5,432	5,515	5,714	34,500
	보 조	34,125	3,135	3,189	3,304	20,500
	용 자	-	-	-	-	-
	지방비	30,775	2,297	2,326	2,410	4,000
	자부담	-	-	-	-	-

##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4〉 참조

##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##### 가. 사업내용

##### (1)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(47종 101점)

○ 시·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(시·도 축산위생 연구소 등)에 식육 중 잔류물질·미생물검사, 원유검사,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

○ 검사장비 구입내역(별표 1)

##### (2) 검사장비 유지·보수비(335,160천원)

○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및 정밀검사 장비의 유지·보수비 지원

○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내역(별표 3)

##### (3) 검사재료비 지원(894,000천원)

○ 식육 중 미생물검사

- 검사대상 : 일반세균수, 대장균수, 살모넬라균 등

- 사업량 : 120천건

- 검사내용 :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(농림부고시),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검역원고시) 참조

- 검사기관 : 시·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○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

- 검사대상 : 항생제, 합성항균제,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

- 사업량 : 약 120천건(소·돼지·닭·오리·양(염소 포함))

- 검사내용 :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(농림부고시) 참조

- 검사기관 : 시·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○ 시중에 유통·판매중인 축산물 수거검사

- 검사대상 : 식육가공품, 유가공품, 알가공품 등

- 사업량 : 6천건

- 검사내용 : '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(검역원고시)', '2006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' 참조

- 검사기관 : 시·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

○ 검사재료비 세부지원내역(별표 4)

##### (4) 지원기준

○ 검사장비,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, 검사장비 유지·보수비

- 정률지원 : 국고보조 50%, 지방비 50%

- 검사재료비 : 국고보조 100%
-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

나.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-〈표 15〉

〈표 15〉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 (단위 : 백만원)

내 용 별	사 업 비					
	사업비 합 계	예산액(농특회계)			지방비	자부담
		계	보 조	용 자		
계	5,714	3,304	3,304	-	2,410	-
검사재료비(1722-215-201)	894	894	894	-	-	-
원유검사지원(1722-215-305)	676	338	338	-	338	-
○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	340	170	170	-	170	-
○검사장비유지보수비	336	168	168	-	168	-
검사장비(1722-215-412)	4,144	2,072	2,072	-	2,072	-

④ 가축방역

1. 목적

- 가축전염병의 발생·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
- 인수공통전염병·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민·관 공동으로 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조기정확화를 위한 더욱 강도 높은 방역시책 추진
- 예방주사,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 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·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을 색출·살 처분 실시, 국가간 검역강화 등 추진
-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(전용전화 1588-4060)와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 체계 구축
- 일선 방역행정기관(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)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확대, 방역기능 강화
-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

3. 근거법령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(보상금) 및 제50조(비용의 부담)

- 수의사법 제34조(연수교육)

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6〉

〈표 16〉 연도별 지원계획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1992~2003년	2004	2005	2006(예산안)	2006 이후
		사 업 비	276,318	36,874	43,309	61,588
보 조 용 자	191,724	27,656	30,482	52,255	209,020	
지방비	-	-	-	-	-	
자부담	84,354	9,218	12,827	9,093	37,812	
자부담	240	-	-	240	-	

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사업내용

- 긴급방역재료비 : 전염병 발생지역 및 전국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공급 등
- 예방약품 등 공급 : 예방주사·검진·기생충구제, 진단키트 등 약품공급
- 예방접종 시술·채혈비 :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시술비 및 소부루세병 검진 채혈비용 지원
- 수의사 연수교육 :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 비용 지원
-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: 구제역, 돼지콜레라, 오제스키병 등
-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: 방역보조원, 방역장비 등

나.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

- 사업대상 : 시·도(군), 가축위생시험소(44개소)
- 지원기준 : 국고 70%, 지방비 30%수준 (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)
- 예방주사,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: 국비 70%, 지방비 30%
- 살처분보상금, 혈형검사사업 등 : 국비 100%
-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예방접종 시술·검진 채혈비 : 국비 50~60%, 지방비 40~50%
-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: 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담 20%

다. 2006도 사업비 내용-〈표 17〉 참조

〈표 17〉 2006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 용 별	사업량	사 업 비					
		사업비 합 계	예산액(농특회계)			지방비	자부담
			계	보 조	용 자		
계		61,588	52,255	52,255	-	9,093	24
간접방역재료비	-	453	453	453	-	-	-
살처분보상금	5,250천두	30,000	30,000	30,000	-	-	-
수의사연수교육	700명	40	40	40	-	-	-
예방주사 등	1,365백만두	28,209	20,319	20,319	-	7,890	-
방역장비	55점	2,886	1,443	1,443	-	1,203	240

## ⑤ 가축 공제

### 1. 목적

- 자연재해(수해, 풍해 등)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
-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
-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

### 2. 시책 및 추진방향

-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(공제사업 정착시키지 납입공제료 일부 지원)
-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
-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개발

### 3. 근거법령

〈표 18〉 2006년도 사업비 내용

(단위 : 천두, 백만원)

구 분	1992~2003까지	2004	2005	2006(●)	
사업량	소	598	215	300	250
	돼지	7,948	4,020	6,000	5,205
	말	2.3	0.4	2.0	0.7
	가금	31,525	29,602	29,706	36,694
	계	10,839.3	33,837	36,008	42,149.7
사업비	계	49,055	27,907	41,850	49,170
	보 조	27,124	14,427	20,925	24,585
	자				
	지방비 자부담	23,231	13,480	20,925	24,585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 시책의 강구)

## 4. 연도별 지원계획-〈표 18〉

## 5. 2006년도 사업시행요령

### 〈사업개요〉

#### 가. 사업내용

- 대상 : 소(생후 2개월령 이상), 말(종빈말, 종모말), 돼지, 가금(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), 사슴
- 공제가입금액 : 가입자 자율결정
- 공제가입기간 : 1년단위(월 단위도 가능)
- 공제요율 :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.
-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
- 납입공제료 : 축발기금보조 50%, 가입자 부담 50%
- 공제금 지급수준(보장범위) : 시가의 80%~100%까지 지급

구분	보장범위(보상하는 사고)	보장내용(공제금 지급)	가입대상
가금	○ 화재, 풍제, 수재에 의한 손해	가입금액과시가중 적은 금액의 95% 까지 보상	제한 없음
	○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-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 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	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%까지 보상	

\*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
#### 나.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〈표 19〉 2006년도 사업비(예산안) 내용

(단위 : 천두, 백만원)

세부사업	사업량 (천두)	사 업 비				
		예산액			지방비	자부담
		계	보 조	용 자		
합 계	42,149.7	49,170	24,585			24,585
○납입공제료	42,149.7	49,170	24,585			24,585
- 소	250	33,536	16,768			16,768
- 돼지	5,205	11,434	5,717			5,717
- 말	0.7	2,058	1,029			1,029
- 가금	36,694	2,142	1,071			1,071
- 사슴						

- 문의 : (02)2127-7673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사업부  
(02)500-1897 농림부 축산정책과 